

의안번호	제 196 호
의 결 연 월 일	2019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9년 5월 3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9년 5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불안정한 대·내외적 통상환경에 종합적·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담당부서를 일원화하고자 단행된 도 조직개편('19. 1. 10일자)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사항임.

※ 조직개편 : 농식품유통과(농식품수출팀) ⇨ 국제통상과(농식품수출팀)

2. 주요내용

- 제명을 조례의 내용에 맞게 변경(안 제명)
(현행)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
(개정)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
- 위원장 및 부위원장 소관 범위 개정(안 제12조제2항)
충북 농수산식품 수출진흥협의회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 활성화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 및 부위원장 소관 범위를 개정하고자 함.
- 당연직 위원의 범위 개정(안 제12조제3항)
충북 농수산식품 수출진흥협의회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 활성화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체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농수산물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농수산물식품 수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하고, “농정국장”을 “농수산물식품 수출 업무 담당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장”을 “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장,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장, 농정국 농식품유통과장 및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(제명) 충청북도 <u>농수산물</u> 수출촉진 지원 조례 제12조(협의회 구성) ① (생략) ②위원장은 충청북도 <u>행정부지사</u>가 되며 부위원장은 <u>농정국장</u>으로 한다. ③당연직 위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,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주사무소장, 산림청 해외자원협력관실장,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충북본부장,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, (재)충북지방기업진흥원장, <u>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장</u>으로 한다. ④· ⑤(생략)	(제명) 충청북도 <u>농수산물식품</u> 수출촉진 지원 조례 제12조(협의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<u>농수산물식품 수출</u>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-----<u>농수산물식품 수출 업무 담당국장</u>-----.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한국</u> 무역협회 충북본부장,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장, 농정국 농식품유통과장 및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-----. ④·⑤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발췌

□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민의 경제, 사회,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,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,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,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6. "농수산물"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농산물: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나. 수산물: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7. "식품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

나.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

제6조(정책 수립·시행의 기본원칙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,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, 해당 지역의 농업·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.